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팀으로 운영하던 정보보호팀을 정규화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과를 일부 통폐합하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무서장(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32명(6급 3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2명)하는 등 직급체계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2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5명(6급 15명)의 직급을 상향(5급 18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임시조직인 개발지원2팀을 설치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교육기획과 명칭을 교육운영과로 변경하고,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변칙 상속·증여 차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21명(9급 2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5.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보호팀장”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보호팀장”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 중 “징세과·법무과·법규과 및 세정홍보과”를 “징세과·법무과·법규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세원과을”을 “세정홍보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8.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9.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10.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11.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12.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관리 업무

13.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제7조제3항제14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세원과장은”을 “세정홍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성실납세지원 홍보

2. 청소년 세금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4. 국세청 누리집 관리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5. 국립조세박물관 운영 및 조세 유물 전시

제9조의2의 제목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지원국에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를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세제운영과장”을 “장려세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제3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8.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를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로,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경리·용도”를 “예산·경리·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제12조의 제목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산관리팀 및 개발지원팀”을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산관리팀·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발지원팀장”을 “개발지원1팀장·개발지원2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지원팀장”을 “개발지원1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내부직원을 위한 엔티스 상담에 관한 사항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과세자료 구축·생성·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 본문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과 부산청의 조사관리과장”을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을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강남세무서 및 성동세무서”를 “강남세무서·성동세무서·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1명(5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데이터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소득자료관리단)”을 “(소득자료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자료관리단장”을 각각 “소득자료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자료관리단”을 “소득자료관리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94”를 “895”로 하고, 일반직계 “890”을 “891”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3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6”으로, 전산사무관 “13”을 “14”로, 세무주사 “238”을 “237”로, 세무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6 중 전산주사 “43”을 “45”로 하고, 세무주사보 “159”를 “158”로, 운전주사보 “2”를 “1”로 하며, 세무서기 31 다음에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고, 전산서기 “40”을 “41”로, 전산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20”을 “921”로 하고, 일반직계 “916”을 “917”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30”으로, 행정사무관 “125”를 “1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6”으로, 전산사무관 “13”을 “14”로, 세무주사 “244”를 “242”로, 세무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전산주사 “43”을 “45”로 하고, 세무주사보 “163”을 “162”로, 운전주사보 “2”를 “1”로 하며, 세무서기 31 다음에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고, 전산서기 “40”을 “41”로, 전산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0”을 각각 “69”로 하고, 세무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을 각각 “72”로 하고, 행정사무관 “3”을 “5”로 하며, 세무주사 “24”를 “22”로, 세무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491”을 각각 “20,303”으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5”를 “17”로 하며, 서기관 “187”을 “188”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1”을 “58”로, 행정사무관 “1,045”를 “1,074”로, 세무주사 “4,331”을 “4,255”로, 세무주사보 “4,545”를 “4,505”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를 “23”으로, 식품위생주사보 “1”을 “0”으로, 전산주사보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 “5,414”를 “5,361”로 하고, 전산서기 “70”을 “68”로 하며, 세무서기보 “3,732”를 “3,714”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4”를 “45”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9”를 “24”로, 사무운영서기보 “379”를 “358”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598”을 각각 “20,410”으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5”를 “17”로 하며, 서기관 “187”을 “188”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1”을 “58”로, 행정사무관 “1,087”을 “1,13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세무주사 “4,371”을 “4,295”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를 “74”로, 세무주사보 “4,548”을 “4,508”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를 “23”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식품위생주사보 “1”을 “0”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17”을 “16”으로 하며, 세무서기 “5,436”을 “5,369”로, 전산서기 “70”을 “68”로, 세무서기보 “3,732”를 “3,714”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4”를 “45”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9”를 “24”로, 사무운영서기보 “379”를 “358”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3)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제2호5)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6)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의2제3항) 다음에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을 신설하고, “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정보보호팀 및 전산관리팀”을 “전산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보호팀장 및 전산관리팀장”을 “전산관리팀장”으로,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을 “전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개발지원팀은 2024년 12월 31일”을 “개발지원1팀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99명(행정사무관 29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을 “18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보 8명)”으로, “29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을 “2명, 세무주사보 8명, 세무서기 8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별표 6의2, 별표7의2, 10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4을 적용한다.

제3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4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43명(행정사무관 14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세무주사 14명, 세무주사보 14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2명 및 별표10의2의 세무주사 14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세무주사보 14명, 세무서기 14명으로 본다.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21
정무직계	1
청장	1
별정직계	3
비서(7급상당)	1
비서(9급상당)	2
일반직계	917
고위공무원단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12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전산사무관	14

세무주사	243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1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
세무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세무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전산주사	45
운전주사	1
세무주사보	162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세무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전산주사보	67
방송통신주사보	2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31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전산서기	41
운전서기	4
전산서기보	14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촬영 담당)	1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총계	72
일반직 계	7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세무주사	24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12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세무서기	9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4] 신설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총계	20,410
일반직 계	20,410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
서기관	18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8
행정사무관	1,116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295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508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6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383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2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68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714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55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29
운전서기보	16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4
열관리운영서기보	14
사무운영서기보	358
기록연구사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생 략)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 획담당관 · 빅데이터센터장 · 정 보화운영담당관 · 홈택스1담당 관 · 홈택스2담당관 및 <u>정보보 호팀장</u>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 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 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으 로</u> ,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 <u>정보보호</u> <u>담당관</u> 각 ----- ----- ----- <u>기술서기관</u>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 좌한다.	⑤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 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 관 리</u>	<u><삭 제></u>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정보보호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 다.	⑧ <u>정보보호담당관</u> ----- ----- -----.

1. ~ 6. (생략)

<신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징세법무국) ① (생략)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법무과·법규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선진납세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등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삭제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제7조(개인납세국) ①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운영지원과) -----
-- 서기관 -----
-----.

제6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세과·법무과·법규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개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
· 소득세과 및 전자세원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8. (생략)

④ (생략)

⑤·⑥ 삭제

⑦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②-----
----- 세정홍보과를 -----

-----.

③-----
-----.

1. ~ 6. (현행과 같음)

7.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
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8.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9.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
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
관리

10.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11.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12.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
관리 업무

13.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
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14. ----- 제13호-----

15.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⑦세정홍보과장은 -----

분장한다.

1.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2.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3.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 · 관리

4.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5.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6.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관리 업무

7.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 · 회신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소득지원국에 장려세제운영과 · 장려세제신청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1. 성실납세지원 홍보

2. 청소년 세금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4. 국세청 누리집 관리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5. 국립조세박물관 운영 및 조세 유물 전시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

-----.

②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

-----.

③장려세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3. ~ 5. (생략)

<신설>

6.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신설>

8. (생략)

④장려세제신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관리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
에 관한 사항

③장려세제과장-----
-----.

1. (현행과 같음)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관리

7. 제2호 및 제5호-----
--

8.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
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5. 삭제

⑤ (생략)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생략)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3.·4. (생략)
- <신설>

5. (생략)

제12조(교육기획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 6.·7. (생략)
8. 예산에 관한 업무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
----- 교육운영과장-----
-----.

제11조(교육지원과) -----
-----.

1. (현행과 같음)
2. 예산·경리·용도 ---
- 3.·4. (현행과 같음)
5.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교육운영과) -----

--.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 6.·7. (현행과 같음)
- <삭제>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생략)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
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
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
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
전산관리팀 및 개발지원팀을 둔
다.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으로, 개발지원팀장은 행
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
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
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
관으로 보한다.

④ ~ ⑦ (생략)

⑧ 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가가치세과
· 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
산관리팀·개발지원1팀 및 개
발지원2팀-----
--.

③ -----

----- 개발지원1팀장·개
발지원2팀장-----
----.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개발지원1팀장-----
-----.

1. (현행과 같음)

2. 내부직원을 위한 엔티스 상

로그인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7조(조사1국) ① (생략)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과 부산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

답에 관한 사항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2. 과세자료 구축 · 생성 ·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

제27조(조사1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청 · 중
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8조(조사2국) ① (생략)

② 조사2국에 조사관리과·조사
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
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
서에 따라 강남세무서 및 성동
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⑫ (생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조사2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청·중부청 및 부
산청-----.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세무서) ① -----

-----.

----- 강남세무서·성동세
무서·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
서-----.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5급 1명) -----
-----.

④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u>소득자료관리단장</u>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소득자료관리단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③ <u>소득자료관리단</u>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정보보호팀</u> 및 <u>전산관리팀</u>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정보보호팀장</u> 및 <u>전산관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u>원 중 데이터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u>소득자료관리과장</u>----- ----- ----. ② <u>소득자료관리과장</u>----- -----. 1. ~ 6. (현행과 같음) ③ <u>소득자료관리과</u>----- ----- -----.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u>전산관리팀</u>----- ----- -----. ② ----- <u>전산관리팀장</u>----- ----- -----
---	--

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각각 분장한다.</u>	----- ----- <u>전산관리팀장</u>----- ----- ----- ----- -----.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개발지원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②·제3조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u>개발지원1팀</u>은 <u>2025년 12월 31일</u>----- --. ②·제3조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u>99명(행정사무관 29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u>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u>29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u>으로 본다. ② (생략)	----- ----- ----- ----- ----- ----- 18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보 8명)----- ----- ----- ----- ----- 2명, 세무주사보 8명, 세무서기 8명-----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94</u>	<u>895</u>	+1
·	·	·	
·	·	·	
일반직계	<u>890</u>	<u>89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9</u>	<u>30</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7</u>	<u>16</u>	-1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u>5</u>	<u>6</u>	+1
전산사무관	<u>13</u>	<u>14</u>	+1
세무주사	<u>238</u>	<u>237</u>	-1
·	·	·	

·	·	·	
세무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u>1</u>	<u>0</u>	-1
전산주사	<u>43</u>	<u>45</u>	+2
세무주사보	<u>159</u>	<u>158</u>	-1
·	·	·	
·	·	·	
운전주사보	<u>2</u>	<u>1</u>	-1
·	·	·	
<u>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전산서기	<u>40</u>	<u>41</u>	+1
·	·	·	
전산서기보	<u>15</u>	<u>14</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20</u>	<u>921</u>	+1
·	·	·	
·	·	·	
일반직계	<u>916</u>	<u>917</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9</u>	<u>30</u>	+1
·	·	·	
행정사무관	<u>125</u>	<u>126</u>	+1
행정사무관 또는	<u>17</u>	<u>16</u>	-1
전산사무관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u>5</u>	<u>6</u>	+1
또는 통계사무관			
전산사무관	<u>13</u>	<u>14</u>	+1
세무주사	<u>244</u>	<u>242</u>	-2
·	·	·	
·	·	·	

세무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u>1</u>	<u>0</u>	-1
전산주사	<u>43</u>	<u>45</u>	+2
·	·	·	
세무주사보	<u>163</u>	<u>162</u>	-1
·	·	·	
·	·	·	
운전주사보	<u>2</u>	<u>1</u>	-1
·	·	·	
<u>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전산서기	<u>40</u>	<u>41</u>	+1
·	·	·	
전산서기보	<u>15</u>	<u>14</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0</u>	<u>69</u>	-1
일반직 계	<u>70</u>	<u>69</u>	-1
·	·	·	
·	·	·	
세무서기	<u>10</u>	<u>9</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3</u>	<u>72</u>	-1
일반직 계	<u>73</u>	<u>72</u>	-1
·	·	·	
·	·	·	
행정사무관	<u>3</u>	<u>5</u>	+2
·	·	·	
세무주사	<u>24</u>	<u>22</u>	-2
·	·	·	
·	·	·	
세무서기	<u>10</u>	<u>9</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491</u>	<u>20,303</u>	-188
일반직 계	<u>20,491</u>	<u>20,303</u>	-188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5</u>	<u>17</u>	+2
서기관	<u>187</u>	<u>188</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4</u>	<u>5</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u>	<u>4</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1</u>	<u>58</u>	-3
행정사무관	<u>1,045</u>	<u>1,074</u>	+29
·	·	·	
·	·	·	
세무주사	<u>4,331</u>	<u>4,255</u>	-76
·	·	·	
·	·	·	
세무주사보	<u>4,545</u>	<u>4,505</u>	-40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4</u>	<u>23</u>	-1

·	·	·	
·	·	·	
식품위생주사보	<u>1</u>	<u>0</u>	-1
전산주사보	<u>17</u>	<u>16</u>	-1
·	·	·	
세무서기	<u>5,414</u>	<u>5,361</u>	-53
·	·	·	
·	·	·	
전산서기	<u>70</u>	<u>68</u>	-2
·	·	·	
·	·	·	
세무서기보	<u>3,732</u>	<u>3,714</u>	-18
세무서기보	또는	<u>45</u>	+1
전산서기보		<u>44</u>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9</u>	<u>24</u>	-5
·	·	·	
사무운영서기보	<u>379</u>	<u>358</u>	-21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598</u>	<u>20,410</u>	-188
일반직 계	<u>20,598</u>	<u>20,410</u>	-188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5</u>	<u>17</u>	+2
서기관	<u>187</u>	<u>188</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4</u>	<u>5</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u>	<u>4</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1</u>	<u>58</u>	-3
행정사무관	<u>1,087</u>	<u>1,130</u>	+43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0</u>	<u>21</u>	+1
·	·	·	
·	·	·	
세무주사	<u>4,371</u>	<u>4,295</u>	-76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u>75</u>	<u>74</u>	-1
·	·	·	

·	·	·	
세무주사보	<u>4,548</u>	<u>4,508</u>	-40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4</u>	<u>23</u>	-1
·	·	·	
·	·	·	
식품위생주사보	<u>1</u>	<u>0</u>	-1
전산주사보	<u>17</u>	<u>16</u>	-1
·	·	·	
세무서기	<u>5,436</u>	<u>5,369</u>	-67
·	·	·	
·	·	·	
전산서기	<u>70</u>	<u>68</u>	-2
·	·	·	
·	·	·	
세무서기보	<u>3,732</u>	<u>3,714</u>	-18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4</u>	<u>45</u>	+1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9</u>	<u>24</u>	-5
·	·	·	

사무운영서기보	<u>379</u>	<u>358</u>	-21
.	.	.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 <u>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 •	• <u><신 설></u> <u>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 <u>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 •	•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 <u><삭 제></u> • •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